

# 구미시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 포상금 조례안

(박순이 의원 대표발의)

|          |  |
|----------|--|
| 의안<br>번호 |  |
|----------|--|

발의연월일 : 2009. 3.

발 의 자 : 박순이·권기만·길윤옥  
김상조·김익수·박광석  
박교상·임춘구·장세만  
전인철·정근수(11인)

## 1. 제 안 이 유

- 구미시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주요 공공시설물의 손괴자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보호로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시민들의 법 질서 확립 및 신고정신을 함양하고자 함

## 2. 주 요 내 용

- 주요 공공시설물은 구미시에서 설치 관리하는 시설물 중 그 범위를 한정하여 지정함 (안 제2조)
- 포상금 지급대상은 주요 공공시설물의 손괴자를 신고한 자나 손괴자 규명에 필요한 사실을 신고한 자로 하며, 포상금 지급 제한 대상을 정함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
- 손괴자에 대한 신고방법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
- 포상금 지급과 지급 한도를 규정함 (안 제6조)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이나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한 경우 포상금을 환수하여야 함 (안 제7조)
- 신고인의 보호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8조)

## 3. 참고사항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구미시영조물등의관리규정」

## 구미시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 포상금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 주요 공공시설물의 손괴자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보호로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시민들의 법 질서 확립 및 신고정신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요 공공시설물"이라 함은 구미시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을 말하며, 그 범위는 별표와 같다.

**제3조(포상금 지급대상)** ① 포상금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로 한다.

1. '주요 공공시설물을 손괴한 자'를 신고한 자
2. 주요 공공시설물의 손괴자 규명에 필요한 사실을 신고한 자

② 제1항에 의해 포상금을 지급해야 할 대상자가 서로 다른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게만 지급한다.

**제4조(포상금 지급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 구미시 소속 공무원과 경찰·교육·소방공무원이 신고한 경우
2. 해당 시설의 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업체 직원이 신고한 경우
3. 손괴관련 사건·사고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이 신고한 경우
4. 이미 담당 공무원이 인지 또는 신고가 되어 있는 사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신고한 경우

5. 공공시설물 손괴와 관련하여 본 조례 규정 외에 구미시와 다른 기관에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경우
6.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 공모 등 부정·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제5조(신고 및 처리)** ① 주요 공공시설물의 손괴자 등에 대해 신고하려는 자는 직접 방문, 우편,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하여 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현장 확인 등을 실시하여 이에 대한 사실을 확인하고, 신고자에게 처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포상금 지급)**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손괴된 공공시설물의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10 범위 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상금 지급대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② 포상금은 손괴자에 의해 원상회복 또는 비용납부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한다.

③ 포상금제도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별 월(月) 지급 한도를 정할 수 있다.

**제7조(포상금 환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이나 제4조에 따른 포상금지급 대상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제8조(신고자 보호)** 시장은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신고인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된 날부터 6개월 이내로 시행한다.

[별표]

주요 공공시설물의 범위 (제2조 관련)

| 구 분                   | 시설물                                                                                                                                                          |
|-----------------------|--------------------------------------------------------------------------------------------------------------------------------------------------------------|
| 1. 도로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도로시설물(도로경계석 등)</li><li>· 도로표지판</li><li>· 가로등</li><li>· 교량(육교)</li><li>· 자전거 보관대</li><li>· 맨홀</li></ul>               |
| 2. 교통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교통신호기</li><li>· 교통안전표지판</li><li>· 시내버스·택시 유·무개 승강장</li><li>· 버스정보안내기</li></ul>                                       |
| 3. 공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벤치</li><li>· 수목보호대</li><li>· 가로수</li><li>· 보호판</li><li>· 보호틀</li><li>· 음수대</li><li>· 공중화장실</li><li>· 체육시설물</li></ul> |
| 4. 소방·안전관련<br>시설물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소방용수시설(소화전, 급수탑, 저수조, 비상소화장치함)</li><li>· 인명구조기구함</li></ul>                                                           |
| 5. 위생 및 기타 시설물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휴지통</li><li>· 상징조형물</li></ul>                                                                                        |
| 6. 기타 시장이 지정하는<br>시설물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무미시영조물등의관리규정」에 따른 관련 공공시설</li><li>- 부서별 지정 관리시설</li></ul>                                                           |

(구미시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포상금에 관한 조례안)

[illegible]